

## 학습자 유형에 따른 법률번역 교육 접근법 연구

– 학위과정 여부에 따른 교육의 차이점 분석 –

박혜진\*

**Hyejin Park (2022), A Study on the approach to legal translation education by learner profile: Comparative analysis of teaching in T&I degree program and the non-degree legal translation certificate course.** *Legal interpretation is no simple matter, and the additional layer of foreign language further complicates the equation. Linguists are often intimidated by the prospect of accessing legal mind and concept, while lawyers take it as a challenge to communicate legal ideas in another language. To fill their distinctive knowledge gaps, it is essential to take a differential approach in teaching legal translation to these disparate segments of learners. This article explores the different strategies adopted in teaching legal translation to students enrolled in the master's degree program at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and those enrolled in the non-degree, legal translation certificate course run by the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On that basis, this article proposes teaching styles calibrated to the unique needs and objectives of the respective student segments. For master's degree students, focus should be on acclimating them to the legal field and enabling them to produce legal translation acceptable to the legal profession. For the non-degree, certificate course students, who most likely already had exposure to legal communication issues, focus should be on a more pragmatic tutorial on effective ways to convey their legal expertise in another language.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Keywords:** legal interpretation, legal language, legal translation, degree program, non-degree legal translation certificate course

**주제어:** 법 해석, 법 언어, 법률번역, 학위과정, 법률번역전문가 비학위과정

---

\* 미국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강사

## 1. 서론

왜 법과 언어인가? 법과 언어가 결합하여 가질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에 대해 Cover (1986: 1601)는 이렇게 묘사했다.

*Legal interpretation takes place in a field of pain and death... Legal interpretive acts signal and occasion the imposition of violence upon others. A judge articulates her understanding of a text, and as a result, somebody loses his freedom, his property, his children, even his life.*

예컨대 법정에서 재판장이 자신의 법 해석에 의한 선고를 내리는 순간, 피고인에 대한 재산의 박탈(벌금형), 자유의 박탈(징역형), 심지어 생명의 박탈(사형)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강제력을 배후로 집행되는 법치의 핵심은 법 해석 행위에 있다. “무엇이 법인지를 밝히는 것은 명백히 사법부의 영역이자 임무(It is emphatically the province and duty of the Judicial Department to say what the law is)”라는 사법심사(judicial review) 원칙을 설파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정표적 판결의 향배를 가르는 열쇠 또한 법문의 해석에 있었다(Marbury v. Madison 1803: 177).

그와 같은 법 해석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집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Hobbes (1651: 223)가 “도검(刀劍) 없는 약속은 단지 말(言)뿐이고, 사람을 보호해 줄 어떠한 힘도 없다(Covenants, without the Sword, are but Words, and of no strength to secure a man at all)”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과연 명령은 약속된 기호이고, 차이의 의미가 언어이며, 기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김지수 2021: 102-103). 다시 말해 법치는 공권력의 그림자 속에 사회구성원 간의 약속이 효과를 발휘하는 과정이며, 이는 언어를 근간으로 한 법 해석을 통해 성립되는 만큼, 법과 언어는 불가분의 관계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여 사회공동체 전체를 떠받치고 있다.

이러한 법과 언어의 상관관계는 양측 영역을 넘나드는 인적 교차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Suk (2013: 164-165)은 문학 전공자였던 자신이 법을 공부하게 된 여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I was well primed to appreciate and enjoy the complex textual and performative character of law, and also to enjoy the constraints and discipline of the language of the law . . . The law school classroom was so like a theater of performance.*

석(Jeannie Suk Gersen)은 유년기 미국 이민으로 그때까지 알던 모국어를 내려놓고 새로운 언어를 처음부터 다시 습득했던 과정, 음악과 발레 공연으로 무대에 섰던 경험을 통해 공연예술에 심취했던 과정, 대학과 대학원에서 문학으로 박사 학위까지 받았던 과정을 거쳐 이윽고 로스쿨에서 언어를 수단으로 법을 해석하는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이 모든 과정이 퍼즐 조각 맞춰지듯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동원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한다(Suk 2013: 178). 특히 그는 미국 로스쿨의 전형적 교수법인 소크라테스식 문답법(Socratic method)에 따라 학급 전체를 청중으로 하여 특정 판례에 대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교수의 질문과 학생의 답변이 마치 공연 실황처럼 전개되는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사고를 언어화함으로써 독립적인 법 해석을 실습하는 과정을 통해 무한한 지적(知的) 자유를 맛보았다고 한다(Gersen 2017: 2320, 2347). 결국 법 해석 행위 또한 언어와 문학이라는 채널을 통해 말과 글을 해석하던 작업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법 언어라는 또 하나의 언어를 기꺼이 습득하며 마음껏 즐기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한다(Suk 2013: 164-165).

이처럼 법은 언어를 통해 작동되고 언어는 법을 해석하고 이행하는 수단인 만큼, 법률가와 언어전문가 모두 법과 언어라는 두 요소를 동시에 다룰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언어를 통한 법치를 위해서는 구성원 공통의 언어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Solan and Tiersma 2012). 따라서 이질적 언어집단 간의 법률적 커뮤니케이션 맥락에서 외국어라는 요소가 가미되면(아드리안 부조·이지은 2013), 법치를 위한 소통은 그야말로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된다. 법체제로나 언어적으로나 상호 이질적 집단 간에 소통이 단절된 상태를 출발점으로 하여 서로의 법에 대한 이해가 등가를 이루는 상태에 이르기 위해 거쳐야 할 단계는 매우 다층적이다. 우선 자국법 관할구성원이 모국어를 매개로 하여 자국법을 해석한 결과 파생하는 법 적용과 그 외국어 번역을 통한 법 적용 사이에 등가적 효력이 성립되는 것을 목표지점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Seleskovitch 2002). 이러한 맥락에서 중간에 법 해석과 번역이라는 복합적 작용 단계가 필수 불가결하다. 이처럼 서로 다른 법체제와 언어권 간 소통 프로세스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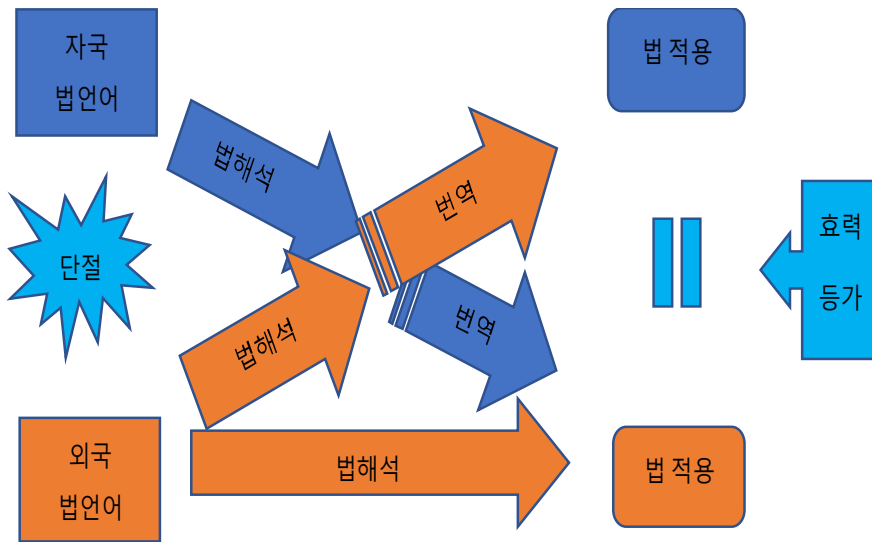


그림 1. 서로 다른 법체제와 언어권 간 소통 프로세스

위와 같이 둘 이상의 법체제와 언어가 개입된 구도에서 일하는 법률가 내지는 언어전문가는 각각 그 출발점이 법률인지 언어인지에 따라 법 언어를 바라보는 각도와 접근법이 다르다. 다시 말해 직업에 따라 법 언어를 대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각자의 직업적 정체성에 기반해 있다. 언어전문가와 법률가 모두 언어를 매개로 분석력을 동원하여 자신이 아닌 타인을 대리하는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의사소통의 촉진자 역할을 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또 다른 공통점은 법과 언어 모두 그 자체가 메시지의 실체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 그보다는 또 다른 전문분야를 효과적으로 담아내는 사고의 틀이자 전달하는 그릇으로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이다(O'Connor 2004: 143). 따라서 법률가와 언어전문가 모두 특정 분야에 대해 일시적으로나마 전문가 수준의 이해력이 있어야만 해당 사건, 문서, 행사 등을 잘 소화하여 의사소통해 낼 수 있다(Seleskovitch 2002; Sotomayor 2014). 이를 도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역피라미드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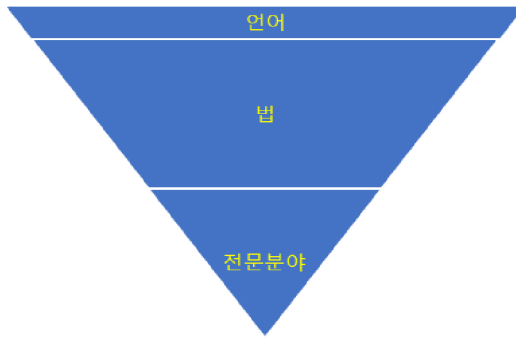


그림2. 언어, 법, 전문분야 간의 상관관계

그러나 근본적으로 언어전문가는 발화되거나 문자화된 내용을 이해한 후 그 의미를 충실히 전하는 중개자이자 메신저(Seleskovitch 2002) 역할을 하는 도관이라는 차원에서 묘사적 의사소통인(descriptive communicator)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법률가는 사실관계에 대한 진단적이고 처방 위주의 접근(diagnostic and prescriptive approach)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설득력 있는 대변인(persuasive advocate)이라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Krieger and Neumann 2007; Scalia and Garner 2008). 이는 직업에 따라 각자 자신의 직을 수행하는 데 최적화된 기능적 방식을 개발하고 그에 몰입하는 데서 파생되는 자연스러운 직업적 작동방식이다. 그렇기에 각 직업 영역에서 법 언어가 차지하는 위치와 그에 대한 접근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 언어 교수자로서는 학습자들의 출발점과 지향점이 어디인지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교육법으로 법 언어 번역 역량을 전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접근법이 직종에 따른 또 다른 전형화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님을 밝혀 둔다. 그보다는 전문 직군별로 강조, 훈련되는 각기 다른 기능에서 파생하는 편차를 대략적인 원형으로 구축해 두면, 각 유형에 따른 사고 패턴과 직무 습관에 맞는 교육법을 통해 수요자 집단에 따른 특수한 요구 사항(needs)에 좀 더 섬세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취지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석사 학위 과정의 통역 전공 학습자에 대한 고급실무번역 수업과, 그와 대비시켜 비학위과정으로 운영되는 법률번역 전문가과정에서 각각 취할 수 있는 교육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 보고, 수요자인 학습자들의 요구에 맞는 접근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본론

이 글에서는 법률번역 학습자를 크게 통역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통역 전공 대학원생 및 법률번역 전문가과정을 수강하는 비학위과정 학습자의 두 부류로 나누어 분석해 본다. 교육내용을 구성하기 전에 교수자는 먼저 학습자의 수준, 배경, 관심을 파악하는 한편 교육목표를 설정하며, 교육과정 전략을 학습자 유형에 맞추어 실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교수학습 교안을 설계, 운영한다(정철자 2011; Peel 2020).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교수법이라는 방대한 분야 중 법률번역 학습자별 차이점이 현저하게 두드러지는 일부 주요 측면들, 즉 학습자 구성 및 요구, 그에 따른 교육과정(커리큘럼), 그리고 교육목표 및 주안점만 따로 떼어 고찰해 보기로 한다.

통역대학원생은 기본적으로 예비 언어전문가이다. 따라서 법률번역에서 이들의 도전은 언어를 출발점으로 하여 법이라는 전문분야의 내용에 접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자신이 보유한 언어적 기량을 통해 법의 실체에 가 닿아 이에 대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숙제인 사람들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3.과 같이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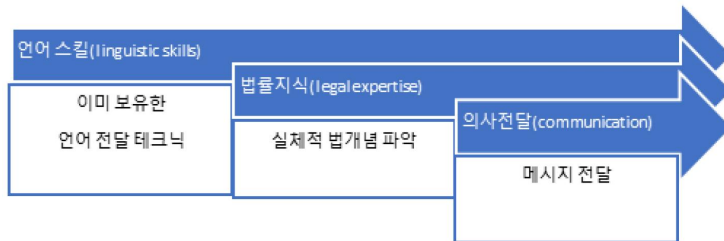


그림 3. 언어전문가의 법률 메시지 전달 모형

반면 법률번역전문가 비학위 과정생의 절반은 기본적으로 법률가 내지는 법률 인접 직역(이광수 2018) 종사자들이다.<sup>1)</sup> 따라서 법률번역에서 이들의 도전은 법률이라는 전문지식을 출발점으로 하여 자신의 법적 사고방식과 아이디어를 외국

1)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2021). 「2021-2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법률번역 전문가과정(9기) 수료식(12/18)」 (online) Retrieved from <https://cms.ewha.ac.kr/user/indexSub.action?framePath=unknownboard&siteId=erits&dum=dum&boardId=1662731&page=1&command=view&boardSeq=50279883&year=2022&month=2&startDate=&endDate=> on June 10, 2022.

어로도 모국어만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문제이다. 즉 이들은 자신이 보유한 법적 실체에 기반한 법률적 소견을 언어라는 매개를 통해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관건인 사람들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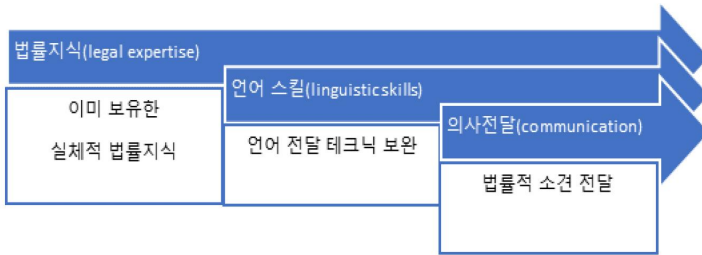


그림 4. 법률가의 법률 메시지 전달 모형

그런 관점에서 본론에서는 먼저 번역 교육, 특히 법률번역과 같은 전문 번역 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다음은 통역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통역 전공자에 대한 번역 교육 방식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비학위과정 학습자들에 대한 교육 방식이 통역 전공 석사학위 과정 재학생에 대한 접근법에 비해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해 본다.

## 2.1. 전문 번역 교육의 이론적 근거

통번역 과정을 크게 3단계로 이해—탈언어화—재표현으로 보는 해석이론은 법률번역 프로세스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Lederer 2001). Seleskovitch (2002)가 주장하고 Lederer (2001)가 계승한 의미 이론(Theory of sense)을 토대로 전문 번역 교육 연구를 수행한 Durieux (2003)는 이와 일맥상통한 개념을 출발어—이해—재표현 단계로 설명했다(Durieux 2003). 언어능력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고, 양질의 번역을 위해 주제 지식, 배경지식을 강조하는 것도 저자의 의도까지 심층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번역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Seleskovitch 2002). 제2 단계인 탈언어화 과정은 해당 텍스트에서 사용된 언어의 문맥상 의미를 도출하는 단계로서, 이때 원문의 구체적 표현으로부터 의미를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Lederer 2001; Seleskovitch 2002). 그렇게 추출된 의미를 가장 적절한 도착어로 재표현함으로써 원문의 단어가 아닌 생각(idea)을 번역할 수 있다(Lederer 2001;

Seleskovitch 2002). 즉, 제2단계인 탈언어화 과정에서 번역사에게 재량이 부여되는데(Lederer 2001), 이때 번역사가 전달대상인 아이디어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만 번역이 성립될 수 있다.

법률번역 맥락에서는 번역사가 실제적 범개념과 법적 사고에 얼마나 익숙한지가 제2단계인 탈언어화 과정에서 의미를 얼마나 정확히 도출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잣대이고, 이는 그다음 3단계에서 매끄럽고 정확한 등가 언어로의 재표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번역은 나열된 단어의 치환이 아니라, 사전에 의미를 파악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임을 상기할 때, 번역 교수자의 소임은 특정 지식이나 해답을 제시하기보다 학습자에게 번역 시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을 스스로 터득해 나가도록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이다(Durieux 2003). 즉, 예비번역사들이 수없이 다양한 상황에 응용할 수 있는 번역 방법론을 발견적(heuristic) 과정을 통해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Durieux 2003). 이를 위해 다양한 번역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적절한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Durieux 2003). 현장에서 실제 사용된 텍스트를 활용하되, 텍스트 난이도를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이상적이다(Durieux 2003). 전문 번역 텍스트의 난이도는 글쓰기 스타일, 자료와 용어 확보의 용이성, 및 전문적 내용의 복합성을 기준으로 판별할 수 있고(Durieux 2003), 이에 더해 법률번역 텍스트는 동원되는 법률 지식의 범위 및 텍스트의 법적 구속력 여부를 난이도 선별에 고려할 수 있다(Monjean-Decaudin and Popineau 2019). 이처럼 법률번역에 특화된 모형을 보다 구체적인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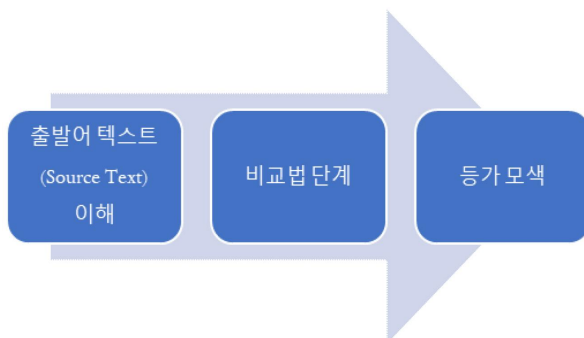


그림 5. 법률번역 프로세스



다시 말해, 출발어 텍스트(source text)를 의미론적,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단계가 우선 필요하고, 그다음은 그렇게 이해한 텍스트에 해당하는 상대방 법체제의 개념을 찾아야 한다. 그런 다음 그 대응 개념에 해당하는 등가적 어휘를 찾아내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Monjean-Decaudin and Popineau 2019). 이처럼 전문 번역 교육 이론에서 강조하는 메시지 이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법률번역에서 그 실체에 해당하는 법에 대한 이해가 번역 수행에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대로 언어전문가와 법률전문가 학습자 집단이 법 언어에 접근하는 출발점과 지향점의 방향이 전혀 다르므로, 이들에게 똑같이 법률번역 기법을 전수하더라도 접근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Durieux (2003)가 제시한 출발어—이해—재표현 단계 중 언어전문가는 출발어와 도착어 수단은 숙련되었으나, 결정적으로 “이해” 단계에서 전문지식이 부족하면 메시지 파악에 공백이 생긴다. 반면 법률전문가는 출발어—이해 또는 이해—표현 구간은 문제없더라도, 다른 한쪽 언어가 취약하면 번역의 고리에 걸뺨이 생긴다. 따라서 교수자-텍스트-학습자 사이에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상향식 나선형 프로세스로 볼 수 있는 번역 교육에서 교수자는 각 학습자가 고유의 번역 문제를 진단하여 그에 대한 해소 방법론을 발견해 나가도록 수업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Durieux 2003).

## 2.2. 통역대학원 통역 전공 석사학위 과정

본 장에서는 통역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통역 전공 학습자에 대한 법률번역 교육법을 살펴본다. 앞서 언급한 학습자 유형에 따른 교육 접근법의 차이점에 비추어, 법률번역 전문가과정과의 비교의 잣대로서 양 학습자 집단의 차이점이 현저한, 학습자 구성 및 요구, 커리큘럼, 교육목표와 주안점의 측면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 2.2.1. 학습자 구성 및 요구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통역 전공 학습자들은 기본적으로 예비 통역사들이지만 통역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요가 높고 필수 불가결한 직업적 구성요소인 번역에 대한 실무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어 현장에 나가도록 준비시키는 차원에서(이지은 외 2014) 1학년 때는 필수과목으로 실무번역을 1년간 수강하고, 2학년이 되어서는 매 학기 선택과목으로 고급실무번역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해 두고 있

다.2) 통역대학원 1학년 때 실무번역 I, II 수업으로 번역의 기본기를 1년간 다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2학년 각 학기에는 고급 실무번역 I, II 과정에서 좀 더 전문화된 텍스트를 번역하는 기량을 습득, 숙달시키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는 세분된 교과과정을 수요자가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변화되는 시장수요에 맞는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화여대 통역대학원의 유연한 맞춤형 교육 방침에 입각한 것이다.3)

통역 전공 학습자들의 학부 전공은 어문계, 인문학, 사회과학, 이공계, 예술 등으로 다양하고, 대학 졸업 직후 곧바로 통역대학원에 진학한 경우와 몇 년간의 직장 경험이 있는 경우 모두 존재하며, 출신 직장 또한 정부 기관, 방송사, 금융기관, 기업체, 법무법인 등 다양하다.4) 대체적으로는 국제회의통역사로 활동하는 것이 목표인 이들에게 번역은 통역 활동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기능 정도로 인식되는 경우도 많지만, 개중에는 애초부터 인하우스 통역사로의 취업을 염두에 두고 번역 실력을 공고히 다져 졸업하고자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는 졸업생 설문조사 결과 통역학과 출신 가운데 영어 전공자의 경우 인하우스 근무 비율이 높은 데서도 확인된다(이지은 외 2014). 실제로 수강생들이 고급실무번역 과목을 수강 신청하게 된 동기에는 기본 번역 실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계약서 등 비즈니스 거래문서(transactional documents)의 번역 기량에 대한 수요가 큰 영향을 끼친 것을 알 수 있다.

법률문서로는 비교적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계약서에 대한 인식이 고급실무번역 과목 수강으로 이끄는 주된 유인이었다면, 수강을 마칠 즈음에는 국제협약, 판결문 등 평소에는 접할 기회가 흔치 않은 자료를 다루어 본 것이 지평을 넓혀 주었다는 평가도 있다.5) 또한 법령에 대해 단순히 번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번역을 감수, 교정해 본다거나, 외국법 체제 독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법 체도를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법령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형태의 발표 자료를 번역, 감수하는 등의 과제 수행도 현장성과 유용성이 있었다는 피드백이 있다.6)

2)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n.d.). 「교과과정: 통역전공」 (online) Retrieved from <http://cms.ewha.ac.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2624085&siteId=gsti&menuUIType=tab> on June 10, 2022.

3)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20). 「대학원 자체평가 보고서: 통역번역대학원」 (online) Retrieved from [http://cms.ewha.ac.kr/user/gsti/통역번역대학원\\_자체평가보고서\\_2020.pdf](http://cms.ewha.ac.kr/user/gsti/통역번역대학원_자체평가보고서_2020.pdf) on June 10, 2022.

4)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고급실무번역 I, II 수강생 설문 응답.

5)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21). 「통역번역학과 한영 통역전공 고급실무번역 I, II 강의평가결과」.

종합적으로 볼 때, 비록 쉬운 과목은 아니지만, 진입에 장벽이 높은 전문분야인 법률문서에 대한 이해도를 단기간에 확연히 올릴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것이 고급 실무번역 I, II 과목을 수강한 통역대학원생들의 대체적인 총평이다.<sup>7)</sup>

예비 언어전문가인 통역대학원생들에게 법률은 통번역 직무를 수행할 때 다루게 될 수많은 전문분야 중 하나이다(Seleskovitch 2002). 추후 특정 분야에 특화해 나가는 졸업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상정하더라도(Seleskovitch 2002),<sup>8)</sup> 일단 통역사의 기본기를 훈련 시키는 석사학위 교육과정에서는 단일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보다는 통역 및 번역 수요 발생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 지식으로 효과적인 언어 소통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Seleskovitch 2002). 따라서 법률 분야 또한 언어전문가의 직업적 본질인 메신저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상정하고 교육을 구상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교육의 목적이 법률전문가를 키워내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법률이라는 하나의 전문분야에 언어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보편적 이해력과 논리력 및 분석력을 활용하여 통번역사의 의미역(semantic range)을 확장 시킴으로써 최대한 무리 없이 그 내용을 다루는 수단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Seleskovitch 2002).

### 2.2.2. 커리큘럼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통역 전공 2학년 고급실무번역 I, II 과목은 경제 분야 영한 번역 담당 교수자 한 명과 법률 분야 한영 번역 담당 교수자 한 명이 조를 이루어 반 학기씩 나누어 강의하는 팀티칭(team teaching) 형식으로 운영된다.<sup>9)</sup> 따라서 교수자 일인에 배당된 약 8주간의 한정된 시수 안에 해당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계획성 있게 응축시킨 정교한 커리큘럼을 짤 필요가 있다. 수업의 기본 방향은 실무 현장에서 전문 통번역사가 엄격한 기준으로 수행할 개연성

- 6)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21). 「통역번역학과 한영 통역전공 고급실무번역 I, II 강의평가결과」.
- 7)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21). 「통역번역학과 한영 통역전공 고급실무번역 I, II 강의평가결과」.
- 8)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20). 「대학원 자체평가 보고서: 통역번역대학원」 (online) Retrieved from [http://cms.ewha.ac.kr/user/gsti/통역번역대학원\\_자체평가보고서\\_2020.pdf](http://cms.ewha.ac.kr/user/gsti/통역번역대학원_자체평가보고서_2020.pdf) on June 10, 2022.
- 9)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21). 「통역번역학과 한영 통역전공 고급실무번역 I, II 강의계획안」 (online) Retrieved from <https://eureka.ewha.ac.kr/eureka/my/public.do?pgId=P531005521> on June 10, 2022.

이 높다고 판단되는 법률문서의 번역을 위주로 설정한다.

방대한 법률문서 분야를 개관하기 위해, 미국 법률 글쓰기의 권위자인 가너(Bryan A. Garner)의 법률문서 분류방식에 따라 법률 분야 한영 번역 커리큘럼의 큰 틀을 수립한다(Garner 2013). 우선 크기는 법률문서 초안 작성(legal drafting) 및 분석·설득형 작문(analytical and persuasive writing) 두 줄기로 문서의 종류를 대분류한 다음, 법률문서 초안 작성 부문은 다시 법령, 계약서의 하위주제로, 분석·설득형 작문 부문은 송무 문서, 판결문, 형사사법공조 요청서, 법학 논문으로 세분화하여 구성한다.<sup>10)</sup> 매 시수의 수업에서는 이렇게 선별적으로 구성된 부류에 부합하는 실제 현장의 문서를 원문 텍스트로 활용한다. 물론 이처럼 실제 법률적 상황에 바탕을 둔 원고를 사용할 때는 적절한 비실명화(redaction) 처리 후 수업에 활용하고, 학습자들에게도 직업상 비밀유지의무 등 법률번역에 수반되는 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안내한다(신지선 2012; Hertog 2010).

본격적인 교육내용으로 들어가서, 번역과제를 출제하는 시점에 간략한 맥락 설명과 함께 관련 용어 리스트(glossary)를 차체에 덧붙여 제공함으로써 매 과제 수행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에 같음한다. 원칙적으로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용어를 조사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8주라는 응축된 시수 안에 효율적으로 법률번역의 전반적 지형을 파악하고자 하는 수업 범위에 비추어 모두의 수고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일단 학습자들이 작업할 재료로서의 용어는 부여한 뒤, 본격적으로 글쓰기의 실체에 집중된 수업을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Durieux 2003). 그렇게 제출된 학습자의 과제물에 기반하여 수업 시간에는 우선 교수자가 해당 문서 특유의 성질, 목적, 독자, 문투, 번역기법 등에 대해 대응되는 미국 법률문서 사례에 비추어 배경지식을 강의한다.<sup>11)</sup> 그 후 학습자들이 제출한 과제물에 교수자의 메모를 달아 수업자료에 익명으로 실어 나머지 급우들에게 공유, 토론, 설명한다.

특히 통역대학원 학습자들에게는 법률의 실제적 내용 파악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법률적 이해가 번역이라는 궁극적 임무 수행을 위한 수단인 만큼(Seleskovitch 2002), 번역의 대상이 되는 원문 및 번역본 텍스트 자체에 대한 분

10)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21). 「통역번역학과 한영 통역전공 고급실무번역 I, II 강의계획안」 (online) Retrieved from <https://eureka.ewha.ac.kr/eureka/my/public.do?pgId=P531005521> on June 10, 2022.

11)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21). 「통역번역학과 한영 통역전공 고급실무번역 I, II 강의계획안」 (online) Retrieved from <https://eureka.ewha.ac.kr/eureka/my/public.do?pgId=P531005521> on June 10, 2022.

석과 문제해결 방법론 제시에 주안점을 두어 진행하며, 적절한 질의 및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채널도 열어 둔다. 마지막으로 해당 원문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된 번역문에 학습자들의 과제물 중 잘된 부분까지 가미하여 완성한 모범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해당 수업을 마무리한다.<sup>12)</sup>

### 2.2.3. 교육목표 및 주안점

향후 통역대학원 졸업생들 모두가 법률번역으로 특화할 것은 아니라는 점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 통역대학원에 진학하는 순간 학습자들은 이미 법률가가 아닌 언어전문가로서의 훈련코스를 선택했다. 그러므로 교수자로서도 “법률”보다는 “번역” 쪽에 방점이 있는 수요자에 대한 교육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언어전문가로 다루어야 할 여러 분야 중 하나로서 법률 분야를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언어를 매개로 보편적 이해력, 논리력 차원의 그릇으로 법적 개념에 접근할 수단을 마련해 주는 것이 관건이다(Seleskovitch 2002). 한편, 번역시장에서 임의의 이중언어 구사자가 아닌, 일정 수준에 부합하는 전문 통번역사를 선별하여 고용할 가능성은 여타 일반 문서 번역의 경우보다는 법률번역일 경우에 더 높고, 그렇게 생성된 법률번역물의 실수요자는 법률가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국내외 법조계에서 통용되는 어법에 부응하는 문서를 생성해 내는 능력이 법률번역 시장에서 최초의 문턱을 넘는 기준치이다. 교수자로서는 그러한 현장 수요와 시장 기대치에 학습자들을 대비시켜 줄 필요가 있다(이지은 외 2014). 따라서 통역대학원 법률번역 교육과정은 이상의 두 가지 상반된 고려사항 간 균형 잡힌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학급별로 주어진 반 학기, 약 8주간의 한정된 시수 안에 짜임새 있고 알찬 강의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법률문서를 법률문서 초안 작성(legal drafting) 및 분석·설득형 작문(analytical and persuasive writing) 두 줄기로 나누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sup>13)</sup> 강의자료를 지속하여 보완, 업데이트하고, 매해 마다 결이 다를 수밖에 없는 학습자들의 집단적, 개인적 특수성에 맞추어 과제 검토 및 조언 등을 통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과제 텍스트도 법령은 물론, 기업 법무 서류, 한미 양국의 송무 문서 및 판결문, 국제기구 및 정부 간 법률문서, 법학 논문, 법률 관

12)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21). 「통역번역학과 한영 통역전공 고급실무번역 I, II 강의계획안」 (online) Retrieved from <https://eureka.ewha.ac.kr/eureka/my/public.do?pgId=P531005521> on June 10, 2022.

13)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21). 「통역번역학과 한영 통역전공 고급실무번역 I, II 강의계획안」 (online) Retrieved from <https://eureka.ewha.ac.kr/eureka/my/public.do?pgId=P531005521> on June 10, 2022.

런 기사 등 시의성과 현장성 높은 자료를 엄선하여, 양국 법체계에 대한 대등한 노출 및 향후 현장 활동의 밑바탕이 되는 실질적 유용성을 주는 수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Seleskovitch 2002). 또한 법률적 배경 설명과 실제법 내용이해 모두 결국은 언어적 메시지 전달이라는 통역대학원생의 목적성에 부합하도록, 텍스트 분석적 접근 및 번역 자체의 기술과 요령에 좀 더 방점을 두어 수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Seleskovitch 2002).

이 모든 법률번역 교육과정의 최종 목적은, 일반 대중은 물론 통역 및 번역 직종 종사자에게도 막연한 심리적 접근장벽이 있는 법률 분야 번역에 대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조금이나마 높이고 거리감을 좁혀, 졸업 후 법률 분야 일을 접했을 때는 법 언어의 엄중함을 숙지하면서도 일단 맡은 문서는 수요자의 신뢰를 얻을 만큼 책임감 있게 번역해 낼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이다(이지은 외 2014). 궁극적으로는 학습자가 현장에서 맡게 될 법률번역물이 법률가들의 의사소통에서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미국 및 글로벌 법률시장에서 통용되는 어법, 스타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복돋는 길잡이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다른 모든 번역수업과 마찬가지로 법률번역 수업도 지식의 전수보다는 법률번역의 요령을 가르치는 노하우 전수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Durieux 2003). 법률이라는 전문분야의 특성상 그 실제 지식을 전수하지 않고 법률번역을 가르칠 방법은 없으나, 어디까지나 수업의 무게중심은 법률문서가 번역 대상으로 주어졌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노하우에 있다는 점을 교수자가 상기해야 할 것이다.

### 2.3. 법률번역전문가 비학위과정

다음은 법률번역전문가 비학위과정에서의 교육 방식을 살펴본다. 순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학습자 구성 및 요구, 커리큘럼, 그리고 교육목표와 주안점 순으로 검토한다. 다만 본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통역대학원 석사학위 과정과의 차이점에 확대경을 대고, 비학위과정 수강생만의 특수한 수요에 걸맞은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차별화된 교육법을 구사할 수 있을지를 묘사한다.

#### 2.3.1. 학습자 구성 및 요구

법률번역 전문가과정은 법률 분야 실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이 분야로 진출하기

희망하는 통번역 및 법률 실무자들을 위한 특화된 비학위 교육과정으로, 법률번역 실습과 관련 지식을 함양하는 14주간의 수업 일정으로 진행된다.<sup>14)</sup> 법률실습 수업에서는 각종 법령, 계약서, 정관, 송무 문서, 판결문, 국제협약, 기업보고서, 특허문서 등 다양한 텍스트를 번역하는 기법을 다루며, 이와 더불어 여러 차례의 특강 세션을 통해 법령 기본 체계를 비롯하여 사법절차, 국제통상법, 특허 등 법률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강의를 병행된다.<sup>15)</sup>

학습자 구성은 프리랜서 통번역사, 대기업 법무실 및 컴플라이언스 부서 직원 또는 계열사 인하우스 통번역사, 법률사무소 직원, 회사원, 대학원생과 같이 법률번역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실무자들이거나, 변호사 또는 공무원과 같이 법률번역 수요자인 동시에 때로 직접 법률번역을 수행해야 하기도 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sup>16)</sup> 이들은 해외 거주, 학부 전공, 통역대학원 졸업, 유학 등 어떤 계기로든 일정 수준의 외국어 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편이고, 통역대학원 출신과 같이 전문적인 통번역 기량을 가진 경우도 많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의 관점과 필요는 통역대학원 재학생의 그것과는 결이 다르다. 이들은 이미 법률 분야에 대한 노출이 상당 부분 되어 있는 직업인으로서, 한편으로는 사전에 법률적 배경 지식을 정식으로 습득할 기회는 없었으나 업무 현장에서 법률번역을 수행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왔고, 그에 대해 스스로 부족함을 느껴서 수강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가나 공무원과 같이 법률번역 사용자로서 느낀 기존 법률번역물의 미진함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이 있었거나, 내지는 법률가로서 자신이 창출해 내는 법률적 메시지의 주체로서 통제권을 갖고 자신의 법률 전문지식과 기본적인 언어능력을 바탕으로 직접 자신의 언어로 법적 진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법을 익히고자 수강하는 경우 또한 드물지 않다.

앞서 언급한 법률가의 직업적 정체성과 기능적 역할 형태를 상기할 때, 이들은 그 대상이 개인이든, 기관이든, 국가 공동체가든,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 해석 행위를 통해 자신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

14)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2021). 「2021-2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법률번역 전문가과정(9기) 수료식(12/18)」 (online) Retrieved from <https://cms.ewha.ac.kr/user/indexSub.action?framePath=unknownboard&siteId=erits&dum=dum&boardId=1662731&page=1&command=view&boardSeq=50279883&year=2022&month=2&startDate=&endDate=> on June 10, 2022.

15)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n.d.). 「2021-2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법률번역 전문가과정(9기) 환영 강의 일정표」.

16)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n.d.). 「이화여자대학교 법률번역 전문가과정 명단」(2018년부터 2021까지 해를 거듭할수록 수강생 중 변호사 등 법률 관련 직업 종사자들의 비중이 괄목할 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고자 하는 이들이다(Susskind 2017: 138). 이러한 업무 속성은 기본적으로 상대측 법리의 허점을 파고들어 공격하는 한편, 자기 측 법리는 철저히 방어하는 열정적 옹호자(zealous advocate) 역할을 내포하고 있다. 법체제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sup>17)</sup> 이들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대항 주의(adversary system) 구도에 기반하여 언어를 창검(槍劍)으로든 방패로든 공수 태세의 무기이자 도구로 구사해야 하는 형국이다(Krieger and Neumann 2007; Scalia and Garner 2008). 따라서 법률 번역이라는 기량의 전수 또한 이들의 직업적 작동방식의 맥락 안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3.2. 커리큘럼

총 14주로 이루어지는 이화여대 통역번역연구소 법률번역 전문가과정 중 여기서는 첫 도입부의 개론 특강, 그리고 실습과목 중에서는 법령번역 및 판결문 번역 두 과목을 표본 사례로 살펴보기로 한다.<sup>18)</sup>

법률번역 개론 특강에서는 법과 언어의 긴밀한 관계성 위에 외국어라는 요소가 더해진 법률번역이라는 고차방정식의 구성요소와 작동방식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 법률번역의 실제 사례를 물꼬로 하여, 강의 내내 학습자의 머릿속에 도입부에 던져둔 법률번역의 사례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유도하는 방향으로 강의를 이어간다. 우선 영어권 법체제 및 국제법 지형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한 후, 국내법과의 접점과 상호작용에 대해 묘사한다. 그렇게 마련된 틀 안에서 법률번역의 작동방식과 요령을 소개한다. 강의 말에 초반에 던져둔 번역문 사례를 다시 볼 때는 그날의 개론 강의를 들으며 습득한 정보와 관점을 기초로 학습자 스스로 개선 방안을 떠올려 볼 수 있게 된다. 이를 화두로 향후 14주간 진행될 법률번역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동기부여와 전개 방식 소개를 하여 법 언어를 바라보는 하나의 프리즘을 제시하고, 그런 차원에서 학습자가 일종의 통과의를 거치도록 안내한다.

이후 이어지는 번역 실습과목 중 법령번역에서는 절반이 법률가인 학습자들의 수요 면에서 무엇보다 정확한 내용 전달에 중점을 두어 수업을 이끌어 간다. 이를 위해 실제로 법률을 번역해 보는 방법도 쓰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번역된 법률번

17) 영미법의 당사자주의(adversary system)에 비하면 한국과 같은 대륙법 체제에서는 법관의 소송지휘에 따른 직권주의(또는 규문주의, inquisitorial system)가 두드러진다.

18)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n.d.). 「2021-2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법률번역 전문가과정(9기) 환영 강의 일정표」.



역문을 감수해 보는 방법도 동원한다. 또한 국제조약과 국내 법령 간의 관계, 법령과 타법과의 관계, 그리고 법령과 시행령 간의 관계성 속에서 상호 연결성, 일관성, 통일성을 의식하고 확인하며 번역에 반영되도록 유도한다. 궁극적으로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게 출발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도록 정확한 번역을 하면서도,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수범자에게 가독성도 높은 도착어 번역본을 작성하는 법을 배운다.

한편 판결문 번역에서는 역시 법률가 학습자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도착어 법체제인 영미법, 그중에서도 미국의 심급제도, 소송시스템에 대한 관점을 함께 제시하면서, 그 맥락 안에서 판결문의 위치와 역할을 자리매김한다. 예컨대 한 사건의 제1심, 항소심, 상고심 판결문을 차례대로 따라 올라가며 살펴봄으로써 판결문의 내용뿐 아니라 심급별 판결문 작성 방식, 당사자 및 원심 지칭 방식, 주문의 처분 방식 등 미국의 법률 시스템 속에서 살아 작동하는 판결문을 접하도록 한다. 내용적 측면에서, 판결문의 주요 구성요소인 판결 주문(disposition), 쟁점 및 판시사항(question presented and holding), 그리고 이유(reasoning) 부분을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게 명확하면서 논리정연한 도착어로 전달하는 법을 익히도록 가르친다. 또한 출발어와 도착어 각각의 법률 시스템만의 특징적인 판결문 구성을 이해하여 도착어 시스템 독자가 이해하며 따라올 수 있도록 글을 쓰는 훈련을 한다.

### 2.3.3. 교육목표 및 주안점

개설과정 특성상 비학위과정 학습자들은 어떤 경로와 이유로든 이미 법률번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주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법률번역을 잘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새삼 강의할 필요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그런 측면의 현장 오리엔테이션은 이미 충분히 된 상태에서, 이제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법률번역 전문가과정의 문을 두드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과는 초반부터 본론으로 직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법률 지식과 개념을 이미 보유한 법률가는 그 법률적 아이디어의 구현 방식을 모국어에서 외국어로, 또는 외국어에서 모국어로 옮길 필요가 있을 때 법률번역 기량을 활용하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법률번역이라는 과제는 이들의 법률적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과 영어권 양측 법률 시스템에 대한 본격적인 비교분석 및 그 지식에 근거한 구체적인 언어적 표현방식의 차이에 대한 고급정보에 목말라 있는 집단이다. 어떤 의

미에서는 법률번역전문가 비학위과정은 영어를 구사하는 법조인을 위한 변호사 계속 교육(continuing legal education, CLE)의 측면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sup>19)</sup> 그런 학습자들에게 법률적 기초지식에만 맴도는 강의를 한다면 학습자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것이므로, 기초 확인 후 신속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학습자들이 이미 보유한 법적 사고방식(legal mind)에 기반하여 그에 상응하는 영미법 개념과 체제에 대한 정보와 연결 지어 줌으로써 자신들이 알고 있는 법적 아이디어를 고 급영어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교수자로서 이때의 도전은, 학습자의 절반은 법률전문가, 다른 절반은 언어전문가인 구성에서 두 그룹의 차등적 지식격차를 차별화하여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변호사들은 자신의 법률 전문지식에 상응하는 개념을 영미법 맥락에서 최대한 정확하게 찾아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고, 반면 통번역사들은 언어전달의 실체를 구성하는 법률 지식을 더 채워 주어야 하는 면이 있다. 어느 한 쪽을 위한 강의에 치중하는 사이 다른 쪽 종사자 학습자들이 흥미를 잃거나 시간 낭비라고 느끼는 경향이 순간순간 포착될 때마다 방향을 선회하여 반대쪽을 보완해 주는 식으로 끊임없는 줄타기를 계속해야 한다. 따라서 수업 초반에 그런 점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면서, 자신은 이미 숙련된 전문분야를 논하더라도 타 분야 종사자 급우들을 위한 취약점 메우기 측면이 있음을 각인시키고 양해를 구하는, 이른바 면책선언(disclaimer) 장치를 두고 시작할 필요도 있다. 법률번역 전문가과정이 궁극적으로 각기 다른 직역 종사자들이 법률번역이라는 공통과제에서 품질 제고를 도모하는 장이므로, 서로가 배움에 걸림돌이 아닌 상호교류를 통한 자양분(cross-fertilization)이 되도록 교수자의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 3. 결론

이 글은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의 통역 전공 석사학위 과정에서의 법률번역 수업과, 통역번역연구소의 비학위과정으로 운영되는 법률번역 전문가과정에서의 수업을 비교, 대조하며 분석함으로써 각기 요구와 지향점이 다른 학습자

---

19)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20). 「대학원 자체평가 보고서: 통역번역대학원」 (online) Retrieved from [http://cms.ewha.ac.kr/user/gsti/통역번역대학원\\_자체평가보고서\\_2020.pdf](http://cms.ewha.ac.kr/user/gsti/통역번역대학원_자체평가보고서_2020.pdf) on June 10, 2022.

에게 맞춤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제언을 했다. 통역 전공 석사학위 학습자들에게는 법률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함께, 일단 맡게 된 법률문서를 법조계에서 통용 가치 있는 형태로 번역할 수 있는 기본기를 다져 주는 데 주안점이 있다면, 현장에서 이미 법률번역의 난제에 노출되어 온 법률 실무가들로 구성된 법률번역 전문가 비학위과정 학습자에게는 심도 있는 비교법적 고려에 기반한 실용적 연결 지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법과 언어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서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힘을 발휘하는 통치 수단이다. 일상을 영위하는 개인이든 공동체가든 법치 사회에서 개별 주체들은 끊임없이 법을 해석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여기에 외국어라는 또 하나의 겹이 더해지면 그 함수관계는 한층 복잡해진다. 언어전문가인 통번역사는 법률이라는 분야의 문턱이 높게 여겨져 법적 사고방식에 대한 접근장벽에 직면할 수 있다. 반면 변호사를 위시한 법률전문가로서는 외국어로의 의사소통이 필요한 국면에서 외국 법체제 의뢰인에게 자신의 전문지식을 흡족하게 전달하기 위한 언어적, 개념적 교량 능력을 보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이러한 양측의 빈자리를 채워 주기 위해서는 같은 법률번역이라는 주제를 전달할 때도 각기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법 언어라는 객체를 바라보는 방향과 각도가 서로 다른 만큼, 채워야 할 지식의 분야와 사고방식이 각기 다른 직역들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출발점을 막론하고 법 언어의 장인으로서의 목표는 서로 다른 법체제와 언어권 사이의 경계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Susskind 2017). 그 목표지점에 이르는 수단과 경로는 다양할 수 있으며, 각 학습자가 스스로 최적화된 학습방식을 모색하도록 돕는 것이 교수자의 몫일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 글에서 제시한 직종별 법 언어 접근방식 모형도 어디까지나 오늘날의 각 과정 수강생 그룹을 바라보는 현시점에 유효한 관점임을 상기하고, 향후 시대변화를 예의 주시하여 매 시점의 학습자 구성과 수요에 시의적절한 교육 방법론을 구사하는 유연한 대처법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지수. (2021).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경기: 열림원.
- 신지선. (2012). 「국내 번역 윤리 규정의 현황 및 관련 규정의 필요성 고찰」. 『T&I Review』 2: 113-128.
- 아드리안 부조·이지은. (2013). 『고급 한영번역의 기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이광수. (2018). 『한국의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제도에 관한 연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총서)』. 서울: 박영사.
- 이지은·유효미·전양주·정희정. (2014). 「통번역학 석사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졸업생 설문조사: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사례연구」. 『T&I Review』 4: 51-71.
-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20). 「대학원 자체평가 보고서: 통역번역대학원」 (online) Retrieved from [http://cms.ewha.ac.kr/user/gsti/통역번역대학원\\_자체평가보고서\\_2020.pdf](http://cms.ewha.ac.kr/user/gsti/통역번역대학원_자체평가보고서_2020.pdf) on June 10, 2022.
-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n.d.). 「교과과정: 통역전공」 (online) Retrieved from <http://cms.ewha.ac.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2624085&siteId=gsti&menuUIType=tab> on June 10, 2022.
-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n.d.).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online) Retrieved from <https://cms.ewha.ac.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2624033&siteId=gsti&menuUIType=top> on June 10, 2022.
-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n.d.). 「학과소개: 통역번역학과」 (online) Retrieved from <http://cms.ewha.ac.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2624058&siteId=gsti&menuUIType=tab> on June 10, 2022.
-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21). 「통역번역학과 한영 통역전공 고급실무번역 I, II 강의계획안」 (online) Retrieved from <https://eureka.ewha.ac.kr/eureka/my/public.do?pgId=P531005521> on June 10, 2022.
-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2021). 「2021 학년도 2학기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법률번역 전문가과정(9기) 학생모집 안내」 (online) Retrieved from <https://cms.ewha.ac.kr/user/indexSub.action?framePath=unknownboard&siteId=erits&dum=dum&boardId=1662731&page=1&command=view&boardSeq=43534074&year=2022&month=2&startDate=&endDate=> on June 10, 2022.
-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2021). 「2021-2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법률번역 전문가과정(9기) 수료식(12/18)」 (online) Retrieved from <https://cms.ewha.ac.kr/user/indexSub.action?framePath=unknownboard&siteId=erits&dum=dum&boardId=1662731&page=1&command=view&boardSeq=50279883&year=2022&month=2&startDate=&endDate=> on June 10, 2022.
-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2021). 「2021-2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법률번역 전문가과정(9기) 입학식(09/04)」 (online) Retrieved from <https://cms.ewha.ac.kr/user/indexSub.action?framePath=unknownboard&siteId=erits&dum=dum&boardId=1662731&page=1&command=view&boardSeq=46536730&year=2022&month=3&startDate=&endDate=> on June 10, 2022.

-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n.d.). 「비학위 및 위탁교육」 (online) Retrieved from <https://cms.evha.ac.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1588802&siteId=erits&menuUIType=sub> on June 10, 2022.
- 정철자. (2011). 「통번역 교육: 교육과정 개발을 중심으로」. 『T&I Review』 1: 127-139.
- Cover, R. M. (1986). Violence and the word. *Yale Law Journal* 95(8): 1601-1629.
- Dernbach, J. C. and Singleton II, R. V. (2007). *A Practical Guide to Legal Writing & Legal Method* (3<sup>rd</sup> edn.). New York: Aspen Publishers.
- Durieux, C. (2003). *Fondement Didactique de la Traduction Technique* (S. Park and H. Lee, Trans.). Seoul: Korea University Press.
- Garner, B. A. (2013). *Legal Writing in Plain English: A Text with Exercises* (2<sup>nd</sup> ed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ersen, J. S. (2017). The Socratic method in the age of trauma. *Harvard Law Review* 130: 2320-2347.
- Hertog, E. (2010). *Aequitas—Access to Justice across Language and Culture in the EU* (J. Kwak, Trans.). Seou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nowledge Press.
- Hobbes, T. (1651). *Leviathan*. London: Penguin Books.
- Krieger, S. H. and Neumann, Jr., R. K. (2007). *Essential Lawyering Skills: Interviewing, Counseling, Negotiation, and Persuasive Fact Analysis* (3<sup>rd</sup> edn.). New York: Aspen Publishers.
- Lederer, M. (2001). *La Traduction Aujourd'hui* (S. Jon, Trans.). Seoul: Korea University Press.
- Marbury v. Madison*. 5 US 137 (1803).
- Monjean-Decaudin, S. and Popineau, J. (2019). How to apply comparative law to legal translation: A new juritraductological approach to the translation of legal texts. *Research Methods in Legal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Routledge, 115-129. halshs-03084449 (online). Retrieved from <https://halshs.archives-ouvertes.fr/halshs-03084449/document> on June 10, 2022.
- O'Connor, S. D. (2004). *The Majesty of the Law: Reflections of a Supreme Court Justice*. New York: Random House Trade Paperbacks.
- Peel, E. A. (2020). *Pedagogy*. Encyclopaedia Britannica (online) Retrieved from <https://www.britannica.com/science/pedagogy> on June 10, 2022.
- Scalia, A. and Garner, B. A. (2008). *Making Your Case: The Art of Persuading Judges*. St. Paul: Thomson/West.
- Seleskovitch, D. (2002). *Interpreting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2<sup>nd</sup> edn.) (H. Cheong, Trans.). Seoul: Hankukmunhwasa.
- Solan, L. M. and Tiersma, P. M. (eds.) (2012). *The Oxford Handbook of Language and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otomayor, S. (2014). *My Beloved World*. New York: Vintage Books.
- Suk, J. (2013). *A Light Inside: An Odyssey of Art, Life, and Law*. Seoul: Bookhouse.
- Susskind, R. (2017). *Tomorrow's Lawyers: An Introduction to Your Future* (2<sup>nd</sup> ed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This paper was received on 15 April 2022; revised on 10 June 2022; and accepted on 20 June 2022.

---

***Author's email address***

hyejin.park@ewha.ac.kr

***About the author***

Hyejin Park is Lecturer at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Licensed attorney admitted to the New York bar, she also teaches the Legal Translation Certificate Course hosted by the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the interface between law and language, bilingual courtroom discourse, and legal translation education.